

2021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2차 공고
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및 노후 공정 개선을 통한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『제2차 안전투자 혁신사업』 내용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3월 22일

고용노동부 장관 . 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1. 사업개요

-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

2.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
□ 신청자격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 - 승강로의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을 동력으로 감거나 풀어서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권동식리프트를 유압식리프트로 교체하고자 하는 소유주
 -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*중주조, 소성가공,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
- * 금형, 열처리, 용접기술부문은 제외

□ 지원내용

- 상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▲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유해위험공정에 대한 개선 및 ▲리프트 교체 비용 지원

- 뿌리공정개선은 주조, 소성가공, 표면처리기술을 사용하여 원재료를 직접 가공하기 위한 생산설비(부속설비 포함)개선 및 그에 따른 환경개선(전기, 환기, 방음 등 공사포함)

지원 분야	지원조건	보조지원금 한도	보조지원금 산정
뿌리공정개선	-	사업비*의 50% (1억원 한도) *장비구매·설치, 해체비 등 포함	보조지원 결정금액이내에서 투자 후 최종 원가정산 후 확정
리프트교체	폐기		표준단가에 따라 산정

※ 원가정산 비용은 최종 투자완료확인 시 적정평가를 받은 투자기업의 사업비 규모에 따라 책정된 금액 지급예정

- (자부담금 납부방식)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금융리스, 할부·론금융 또는 일시금 직접 납부 방식 중에서 선택

□ 지원제외 사항

- 뿌리공정개선의 경우, 지원대상 뿌리기술(주조, 소성가공 및 표면처리기술)을 사용하는 공정과 직접 관계가 없는 기계·기구*
 - * (예시) 절삭가공기계류(선반, 밀링머신, 드릴링머신, 보링머신, 기계톱, 연삭기 등), 사출성형기계, 용접기 등
- 개선대상 공정과 전기적, 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지게차(입식, 좌식)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단순 기계·기구*
 - 단, 방호장치 설치는 공정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
 - * (예시) 핸드리프트, 적재대, 공구대(공구함), 작업대, 이동대차 등 단품 기계·기구류
- 공정개선 없이 작업장의 바닥, 조명 등 공정개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공사

※ 뿌리공정개선의 경우, 총사업비 3,000만원 미만은 지원불가

3. 추진절차



4. 사업대상 선정방법

❖ 신청사업장 중 요건검토를 통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①우선지원 대상사업장을 선정하고 우선지원 대상사업장 중 ②재정·현장평가를 통해 적정한 사업장을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

① (우선지원 대상사업장 선정) 사업별 우선순위 적용 방식을 적용하여 「우선지원 대상사업장」을 선정

< 사업별 우선순위 적용 방식 >

- ▶ 사업주 의지, 위험수준, 영세성 등을 종합하여 우선순위 결정
 -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주의 투자의지
 - 사업장 규모(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)
 - 사업장 및 공정 노후도

② (대상선정 평가)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▲재정평가, ▲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

※ 재정평가 : 금융리스크, 할부·론금융 등 금융지원 가능 여부 평가

※ 현장평가 : 사업계획서 적정성 등을 평가

< 설비공사 적정성 현장평가 >

- ▶ (방법) 신청 사업장에 방문, 개선대상 공정 확인 및 CEO 면담 등을 통해 평가
- ▶ (항목) 개선에 따른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, 생산성 개선 정도, 사업 완수 가능성, 개발 일정의 타당성 등(100점 만점)
 - * 전체 배점 중 60점 이상은 심사 상정, 60점 미만은 1회에 한하여 재평가, 2회 이상 60점 미만 사업장은 사업계획서 등 반려 조치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: '21. 3. 22.(월) 09:00부터 4. 21.(수) 18:00까지

※ 사업 참여신청 등에 따라 추가 접수 예정

□ 신청방법

-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(<https://anto.kosha.or.kr>)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

○ 신청서류

<필수 제출 신청서류>

- ▶ 사업자등록증(사본)
- ▶ 산재완납증명원(발행 후 3개월 이내, 사본)
- ▶ 사업계획서 1부(자료실 참조)
- ▶ 견적서(공급업체 날인된 견적서 사본), 세부산출내역서, 도면 각 1부
- ▶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(발행 후 3개월 이내, 사본)
- ▶ 정보제공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전자동의서 적용)

□ 문의처

- 안전투자 혁신사업 콜센터 1644-4555
-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(<https://anto.kosha.or.kr>) Q&A 게시판

6. 참여제한 사항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

<참여 제한 사유>

- ▶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서류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▶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
- ▶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▶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(보조금 부당수급 등)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

*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7. 기타 사항

- 공정개선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(산업안전보건법),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및 취급시설검사(화학물질관리법) 대상 사업장의 경우,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·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협업하여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심사·검사에 소요되는 민원기간을 단축시켜 드립니다.
- 상기 사업단계별 추진일정, 추진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